

한국정보과학회 가헌학술상 포상규정

1999년 10월 15일 제정
2005년 10월 7일 개정
2010년 10월 28일 개정
2011년 11월 30일 개정
2013년 6월 20일 개정
2014년 10월 23일 개정
2016년 6월 9일 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과학회(이하 학회)에서 수여하는 가헌 학술상의 포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수상 자격)

본 상은 대한민국 정보과학 발전과 학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1.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 또는 영문 논문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
2. 저명한 국제학술지 또는 국제학술대회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

제 3조 (후보자 추천)

후보자 추천은 회원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공지된 기간 내에 소정양식의 추천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추천서류)

후보자 추천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추천서 1부 (소정양식)
2. 피추천자의 이력/약력사항 1부
3. 대표논문 7편
 - 1) 최근 5년내 학회 국문 또는 영문논문지에 게재된 대표논문 2편
 - 2) 저명한 국제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대표논문 5편

제 5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 부회장이 되며, 위원은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국·영문 논문지 편집위원장이 된다.
2. 필요할 경우, 회장이 1~3인의 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 6조 (수상자 선정)

1.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포상추천서를 작성, 법제포상위원회에

- 추천한다. 포상추천서는 순위를 갖는 2명의 포상후보자의 심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제포상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의 포상추천서를 검토하여 수상자 1명을 결정하여 회장,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 7조 (시상)

시상은 매년 시행하며 상패와 부상을 학회장과 가헌장학재단 이사장 공동명의로 수여한다.

제 8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포상규칙에 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